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45 발의연월일: 2020. 11. 10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· 서영석 ·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24조제1항제1호, 제26조제2항, 제33조제1항 및 제2항,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.

법률 제 호
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무상태표

제26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제34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
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결산서류의 작성등) ① 이	제24조(결산서류의 작성등) ①
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	
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"결	
산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	
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
1. 대차대조표	<u>1. 재무상태표</u>
2. • 3. (생 략)	2.•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결산서류의 승인등) ①	제26조(결산서류의 승인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	②
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	
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	
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	
에 제출하여야 하며, <u>대차대조</u>	<u>재무상태표</u> -
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	
하여야 한다.	
제33조(재산상태의 조사) ① 청산	제33조(재산상태의 조사) ①
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	
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	
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	
과 <u>대차대조표</u> 를 작성하여 이	<u>재무상태표</u>
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
-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<u>대차대조표</u>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 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다.
- ③ (생략)
- 제34조(재산목록등의 승인등) ① 청산인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 과 <u>대차대조표</u>의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.
 - ③ 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<u>대차대조표</u>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,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(국내에 영업소가 설

②	
<u>재무상태표</u>	
③ (현행과 같음)	
제34조(재산목록등의 승인등)	1
<u>재무상태표</u>	
②	
- <u>재무상태표</u>	
<u>.</u>	
③	
<u>재무상태표</u>	

치된 경우에 한한다)에 비치하	
도록 하여야 한다.	